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8. 5.
제출자 : 이천시장

제안이유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안 제2조).
- 나.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보강, 대피 또는 퇴거명령자의 이주비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함(안 제4조).
- 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함(안 제5조).
- 마.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작성하여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이천시의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 (기금의 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2.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②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천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에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제장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중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등)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